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3)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엄대석)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위

- 제안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96호

2. 제안이유

- 2023. 12. 31.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동 경로식당」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기관명	소재지	설치일	규모		이용인원		급식 횟수	현재 수탁자 (법인명)
			면적	좌석	무료급식	식사배달		
성남동 경로식당	중원구 원터로 93번길10,지층	1995.2.21.	232㎡	104석	180명	20명	주 5회	성남동성당

- 위탁개요

- 위탁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 위탁내용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신청자격: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정구 노인급식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
 - 중원구 노인급식 지원위원회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위탁체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위원별 배점을 합산하여 최다 득점을 얻은 자
- 예산지원(예정)액: 313,92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313,920	
무료급식	181,440	4,000원 × 180명 × 252일 = 181,440,000원
식사배달	27,270	4,500원 × 20명 × 303일 = 27,270,000원
취사원 인건비	96,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 인건비: 1,853,340원 × 1명 × 12월 = 22,240,080원 · 조리사 인건비: 1,490,000원 × 4명 × 12월 = 71,520,000원 · 복리후생비: 50,000원 × 5명 × 12월 = 3,000,000원 · 상해공제 가입비: 10,000원 × 5명 × 연 1회 = 50,000원
부대비용	8,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자원봉사 활동비: 400,000원 × 12월 = 4,800,000원

※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노인복지법」 제4조
 -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향후 추진내역
 - 위탁모집 공고: 2023년 10월
 - 수탁신청서 접수: 2023년 10~11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년 12월

5. 검토 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¹⁾ 및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성남동 경로식당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²⁾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³⁾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며,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 또한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복지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성남동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계 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 개정 2019.11.25.>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2. 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 2. 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 2. 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 2. 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 2. 17.><일부개정 2020. 2. 24.>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 2. 17.><일부개정 2020. 2. 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 2. 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 2. 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2. 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 2. 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 2. 24.>